

플랫폼 프리랜서노동자 관련 세무와 절세방안

목 차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개요
- ✓ 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 ✓ 장부 작성 신고와 절세
- ✓ 프리랜서노동자 공제 항목
- ✓ 기타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소개

개요

종합소득세 산출흐름도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

경비율 적용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업종구분	귀속연도	기준수입금액
	2021년 귀속	2020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구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주요경비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주요경비 증명서류의 비치·보관

- ◆ 주요경비 증명서류는 장부작성 신고와 동일
- ◆ **매입비용, 임차료**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제출
- ◆ **인건비** 증명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지급 관련 기타의 증명서류

근로소득공제 (비교 : 사업소득 필요경비 적용방식)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 원

장부 작성 신고와 절세

기장의 종류

구분	대상자	법조문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간편장부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임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복식부기 장부종류

- ◆ 재무상태표
- ◆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 현금흐름표
- ◆ 자본변동표
- ◆ 주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기장 의무 판단 기준

- ◆ **복식부기 작성대상**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
- ◆ **간편장부 작성대상**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자

업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간편장부 서식

① 일자	② 계정 과목	③ 거래 내용	④ 거래처	⑤수입(매출)		⑥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⑦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매매)		⑧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간편장부 작성 신고시 제출 서류

-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74호 서식)
-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 ◆ 기타 부속서류

*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미제출

경비 인정 정규증명서류

- ◆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매출전표
- ◆ 계산서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 & 일반영수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경비 인정 기타 증명서류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장부 무기장시 불이익

●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 단,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불가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Max(산출세액의 20%,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의 0.07%)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프리랜서노동자 공제 항목

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0조~제53조)
&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 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 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미만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 (7세이상)	-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제86조의3)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대상자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성실사업자 외	연 7만원

기타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소개

비과세저축

◆ 비과세 저축: 세금 전액 면제

저축명	가입대상	불입요건	적용기한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5,000만 원 이하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19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3,000만 원 이하	2022. 12. 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연간 240만 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재형저축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분기별 300만 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015.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2015년 가입 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 : 연간 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자, 농어민 : 종합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연간 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일반형 : 서민형 이외의 자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형 : 본인이 직접 운용 ◆ 일임형 : 운용전문가에게 일임 ◆ 신탁형 : 운용지시
운용대상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등
투자손실	◆ 투자손실액만큼 비과세한도 추가 인정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후 납입원금 한도 이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 3년 미만에 중도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계약기간	◆ 3년 이상(계약만료일 전 연장 가능)
납입한도	◆ 5년간 총납입금액 1억원 이하(연간 2천만원 이하)
세금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형 : 이자소득 등 합계액 4백만원 이하 • 일반형 : 이자소득 등 합계액 2백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한도 초과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 군인연금법상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 • 별정 우체국법상 별정 우체국 직원
수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 55세 이상 / 5년 이상 연금 지급 ◆ 일시금 : 55세 이상 가입자가 일시금 선택시
운용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부담
중도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특정한 사유* 발생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 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까지 가능(특정한 사유 발생시)
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부담금 합계액 : 1,800만원 이하
세금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 부가가치세 /

- ✓ 등록된 사업자 관련 제세금
- ✓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절세
-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중요성
-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증명서류

등록한 사업자 관련 제세금

등록사업자 관련 세금 개관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 가치세	법인 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 1.~4. 25. 7. 1.~7. 25. 10. 1.~10. 25. 다음 해 1. 1.~1. 25.	1. 1.~3. 31.의 사업실적 4. 1.~6. 30.의 사업실적 7. 1.~9. 30.의 사업실적 10. 1.~12. 31.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2기 확정	7. 1.~7. 25. 다음 해 1. 1.~1. 25.	1. 1.~6. 30.의 사업실적 7. 1.~12. 31.의 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다음 해 1. 1.~1. 25.	1. 1.~12. 31.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 해 5. 1.~ 5. 31.	1. 1.~12. 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 15.고지)	11. 1.~ 11. 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개별 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수입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 해 1. 1.~2. 10.		1. 1.~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 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 10. / 다음 해 1. 10.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절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발급

▪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판단기준

Q 인적용역의 경우 면세 적용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②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10% 세율 적용,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

◆ 간이과세자

- 1.5%~4%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공제
-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간이과세 포기

- ◆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 ◆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법인: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 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중요성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시기 (질문/과세기간)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21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2년 2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천 5백만 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시기 (답변/과세기간)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21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22년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백만 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증명서류

매입세액 증명 적격 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다】

- 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② 간이 신규자
- ③ 면세사업자
- ④ 일반과세자 중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위해 발간한 안내책자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